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1. 11.

제 출 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1년 인권영향평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1.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평가결과 요약	1
I.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6
1. 총평	6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6
3. 개선 과제	7
4. 분야별 평가 결과	8
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8
나. 고용 상 비차별	10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1
라. 강제노동의 금지	12
마. 아동노동의 금지	13
바. 산업안전 보장	14
사.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6
아.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7
자. 환경권 보호	18
아. 학생 인권보호	19
II. 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20
1. 총평	20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20
3. 개선 및 발전 방안	22
III. 구제절차 타당성 제고 방안	23
1. 대학 구제절차 현황	23
2. 검토 결과	25
IV. 향후 과제	30
1. 2021-2022 중점추진 과제	30
2. 경영평가 연계	33

평가결과 요약

1. 주요 고려사항

구분	내용
절차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절차에 외부 인권 전문가 참여로 평가결과의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절차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해관계자 참여 (내부평가, 심층인터뷰, 평가결과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 검토)로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대학 및 평가대상 사업 내부 전문가가 직접 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 및 정책 환류 용이성 확보
평등 및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금지 관점에서 인권 정책 및 이행시스템, 관행 인권영향 평가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 관점에서 개선방안 제시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재적·잠재적 인권침해 요소 파악에 초점 평가결과를 피해자 구제절차와 연계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지표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에서 다루고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인권 이슈 적용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표준 매뉴얼 적용 권고 이후 등장한 인권이슈(COVID-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평가지표 반영

2.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가. 기관운영

연번	분야	2021년		2020년	
		항목	지표	항목	지표
1	인권 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30	인권존중 정책 선언	3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인권경영 성과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18	고용상 비차별	17
		고용상 남녀 비차별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6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 조치	
4	강제노동 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13	강제노동 금지	13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 노동 예방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 노동 예방	
5	아동노동 의 금지	연소자 고용금지	14	연소자 고용금지	14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32	작업장 안전	18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1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주민의 인권보호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호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비상계획 수립	
10	학생인권 보호	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8	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6
		교육과정 및 서비스 결함 조치		교육과정 및 서비스 결함 조치	
		학생 사생활 보호		학생 사생활 보호	
		인권침해 예방 조치		인권침해 예방 조치	
합계	10	34	179	34	162

주1) 국가인권위원회 표준매뉴얼(10분야, 33개 항목, 155 지표) 참조

주2) 최근 기업과 인권 이슈(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COVID-19) 보완

나. 사업

연번	사업	항목	지표	비고
1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양성 (교직 및 향상 훈련)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10	학교 인권정책과의 통합 정도 평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사업 이해관계자 인권이슈 평가
		정보 제공		사업 상세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교직역량 보수교육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10	학교 인권정책과의 통합 정도 평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사업 이해관계자 인권이슈 평가
		정보 제공		사업 상세정보 제공
3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공역량 보수교육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10	학교 인권정책과의 통합 정도 평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사업 이해관계자 인권이슈 평가
		정보 제공		사업 상세정보 제공
4	일학습 병행제 전담인력 양성연수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10	학교 인권정책과의 통합 정도 평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사업 이해관계자 인권이슈 평가
		정보 제공		사업 상세정보 제공

주1) 매년 평가대상 사업 점진적 확대 시행 중

3. 평가결과

가. 종합

구분	분야	답변 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021	2020
기관 운영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9	1	0	0	0	96	89.7
	고용 상 비차별	18	0	0	0	0	100	100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0	0	0	0	100	100
	강제노동의 금지	10	3	0	0	0	90.8	86.3
	아동노동의 금지	5	0	0	0	9	100	100
	산업안전 보장	31	1	0	0	0	98.8	100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4	5	0	0	2	77.8	63.3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4	0	0	0	7	92	88.6
	환경권 보호	18	0	0	0	0	97.8	83.7
	학생인권 보호	18	0	0	0	0	100	100
	합계(평점)	151	10	0	0	18	96.5	91.2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양성 (교직 및 항상 훈련)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2	1	0	0	0	86.7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4	1	0	0	0	92
	정보 제공	2	0	0	0	0	100
	합계	8	2	0	0	0	92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교직역량 보수교육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2	1	0	0	0	86.7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4	1	0	0	0	92
	정보 제공	2	0	0	0	0	100
	합계	8	2	0	0	0	92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전공역량 보수교육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2	1	0	0	0	86.7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4	1	0	0	0	92
	정보 제공	2	0	0	0	0	100
	합계	8	2	0	0	0	92
일학습 병행제 전담인력 양성연수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2	1	0	0	0	86.7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4	1	0	0	0	92
	정보 제공	2	0	0	0	0	100
	합계	8	2	0	0	0	92

*100점 단위 환산 = $\Sigma(\text{해당항목 지표점수}) / (5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 100$
(예 5점·보완필요 3점·정보 없음 1점·아니요 0점·해당없음 평가 제외)

나. 개선 및 발전 방안(기관운영)

분야	개선 과제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①인권위원회 구성 보완 ②인권경영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
강제노동 금지	③인권침해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잠재된 강제노동 요소 개선
산업안전 보장	④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준수 강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⑤계약절차에 학교 인권정책 확산 장치 마련

다. 개선 및 발전 방안(사업)

항목	개선 과제
인권실사 시스템 구축	⑤계약절차에 학교 인권정책 확산 장치 마련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④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준수 강화
정보제공	⑥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사업정보접근성 보장

4. 구제절차 타당성 제고 방안

구분	개선 과제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규칙 구성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부위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구제절차 독립성, 접근성,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제10조, 11조) • 제17조 1항 직권조사 규정 구체화 • 구제기구 위원 및 전담조직 실무자(고충상담원) 대상 구제절차 교육 및 훈련 제공(제7조 규정 보완) • 외부 사법적·비사법적 구제기관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관련 인권고충이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 표명(제33조 4항으로 보완 또는 별도의 항으로 신설) • 조사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서식 보완
구제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총장보고 및 확인사항 명시 • 임시조치 및 직권조사 단계 명확화로 활용도 제고 • 구제대상여부 판단 후, 대상이 아닌 경우 고충상담 제공 순으로 절차 개선 • 외부 구제수단 이용 시 대응 표시

5. 향후 계획

성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조치 실행 성과 추적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정보 관리 • 성과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 	6개월 내				
↑						
개선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및 개선 계획 심의 • 인권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 보고 • 평가결과 및 개선 계획 승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조치 실행 •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5개월 내
↑						
개선 계획 수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 및 비즈니스 관행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개선 계획 수립			1개월 내		

I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총평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 UNGPs>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권준중 책임 준수를 위한 인권실사(Due diligence)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기관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인권침해 피해 발생 시 이를 다루는데 필요한 조직적·제도적 역량이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전체 179개 지표 중 ‘해당없음’ 을 제외한 162개 지표에 대한 충족정도를 나타내는 응답 분포는 예(91.4%), 보완 필요(8.6%)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96.5점으로 나타났음
- 다만, 외부 사업 참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준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준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인권경영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권센터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연번	분야	답변 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021	2020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7	3	0	0	0	96	89.7
2	고용 상 비차별	18	0	0	0	0	100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0	0	0	0	100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	3	0	0	0	90.8	86.3
5	아동노동의 금지	5	0	0	0	9	100	100
6	산업안전 보장	31	1	0	0	0	98.8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4	5	0	0	2	77.8	63.3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4	1	0	0	6	92	88.6
9	환경권 보호	17	1	0	0	0	97.8	83.7
10	학생 인권보호	18	0	0	0	0	100	100
합계(평균)		148	14	0	0	17	96.5	91.2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항목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보완필요 3점·정보없음 1점·아니요 0점)
- ※ 항목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Sigma(\text{해당항목 지표점수}) / (5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times 100$
- ※ 해당 없음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3.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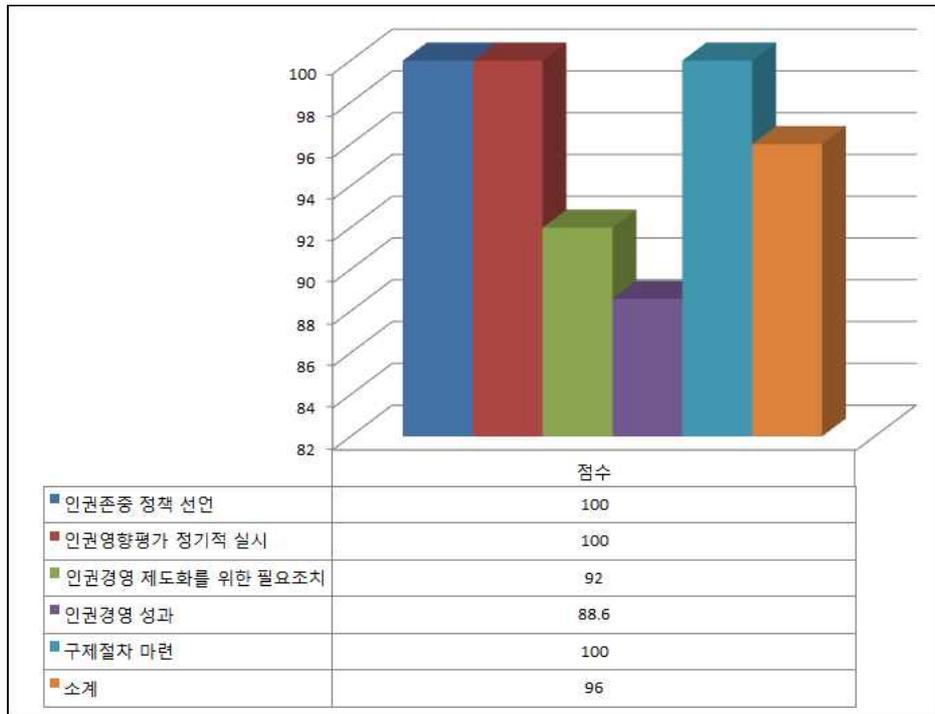
연번	분야	개선 과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①인권경영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
2	고용 상 비차별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4	강제노동의 금지	②인권침해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잠재된 강제노동 요소 개선
5	아동노동의 금지	-
6	산업안전 보장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준수 강화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④계약절차에 학교 인권정책 확산 장치 마련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9	환경권 보호	-
10	학생인권 보호	-

4. 분야별 평가 결과

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1)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목	답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존중 정책 선언	7	0	0	0	0	10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5	0	0	0	0	100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4	1	0	0	0	92
인권경영 성과	5	2	0	0	0	88.6
구제절차 마련	6	0	0	0	0	100
소계	27	3	0	0	0	96



2) 개선 및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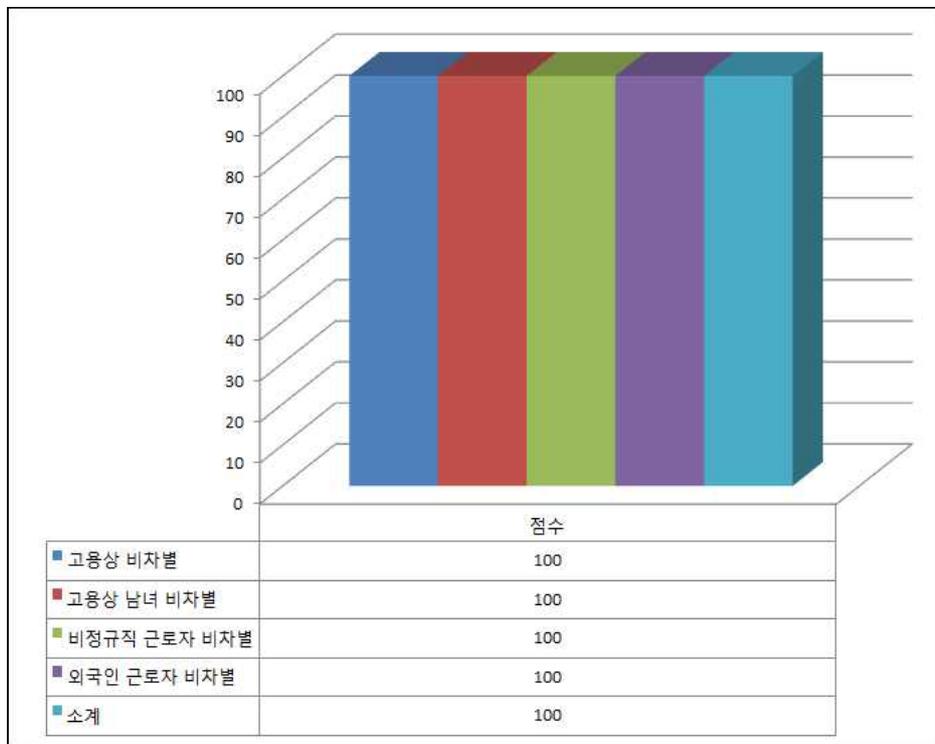
연번	개선과제	문제점	추진 방향
①	인권위원회 구성 보완	• 인권경영추진기구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인권위 표준	•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권경영이행규칙

		<p>매뉴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학생이 배제되어 있음 • 인권심의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 심의 및 의결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한 경우 인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 상 외부위원 비중이 50%미만으로 독립적인 심의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p>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원회 외부위원 비중을 50%이상으로 개선해 독립성 보완
②	<p>인권경영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실행성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된 자료(연례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접근 제약 • 학교 및 인권센터 웹사이트에 공개된 인권경영 성과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기관의 인권준수 노력을 평가하기에 부족 • 성과 공개 부족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족과 인권정책 준수책임 회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이행성과 정보를 인권센터 웹사이트에 반기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성화 (e.g. 인권센터 게시판을 통해 인권경영성과, 인권정책 및 구제시스템, 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의견, 효과성 정도,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채택된 의견에 대해 보상) • 성과정보는 경영실적보고서 내용 활용 • 인권센터 웹사이트 접근성 제고(학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등 접근 채널 다양화)

나. 고용상 비차별

1)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목	답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용상 비차별	5	0	0	0	0	100
고용상 남녀 비차별	7	0	0	0	0	100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4	0	0	0	0	100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2	0	0	0	0	100
소계	18	0	0	0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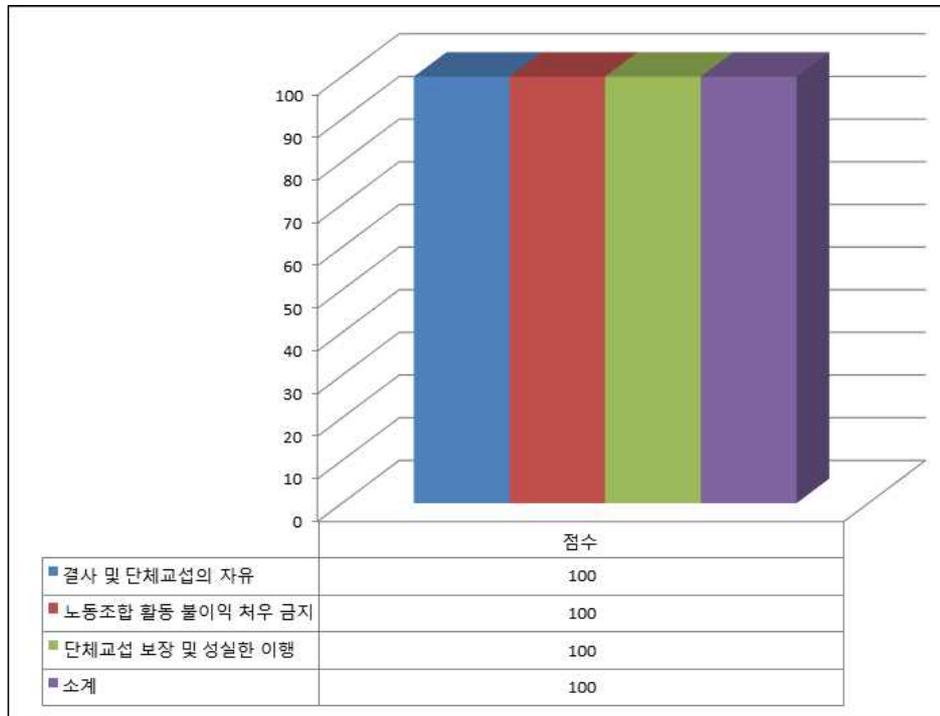
2) 개선 및 발전 방안

-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목	답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	0	0	0	0	100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0	0	0	0	100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0	0	0	0	100
소계	14	0	0	0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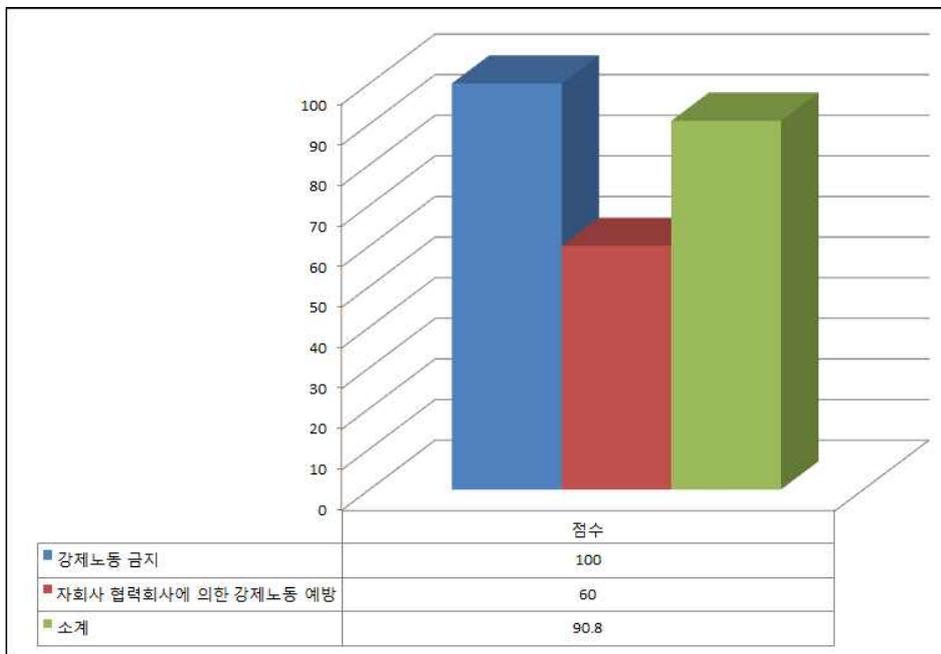
2) 개선 및 발전 방안

-

라. 강제노동 금지

1)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목	답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강제노동 금지	10	0	0	0	0	100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0	3	0	0	0	60
소계	10	3	0	0	0	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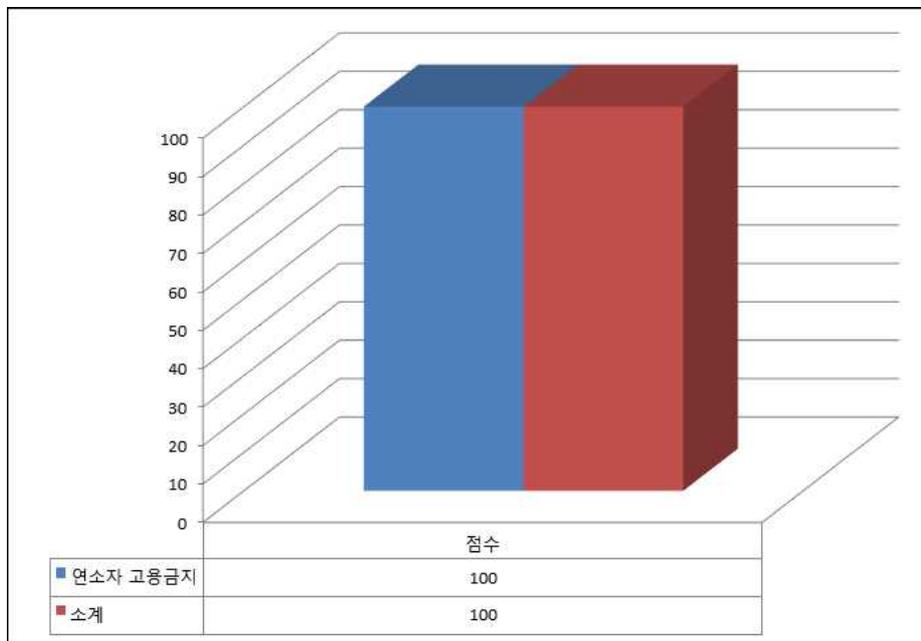
2) 개선 및 발전 방안

연번	개선과제	문제점	추진 방향
③	인권침해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잠재된 강제노동 요소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생 인격권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강제노동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갑질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존재한다는 응답 비중이 적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유형 및 가해자 현황, 원인 등을 파악 구제절차 접근성 제고 인권교육 콘텐츠 반영

마. 아동노동 금지

1)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목	답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연소자 고용금지	5	0	0	0	1	100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0	0	0	0	8	-
소계	5	0	0	0	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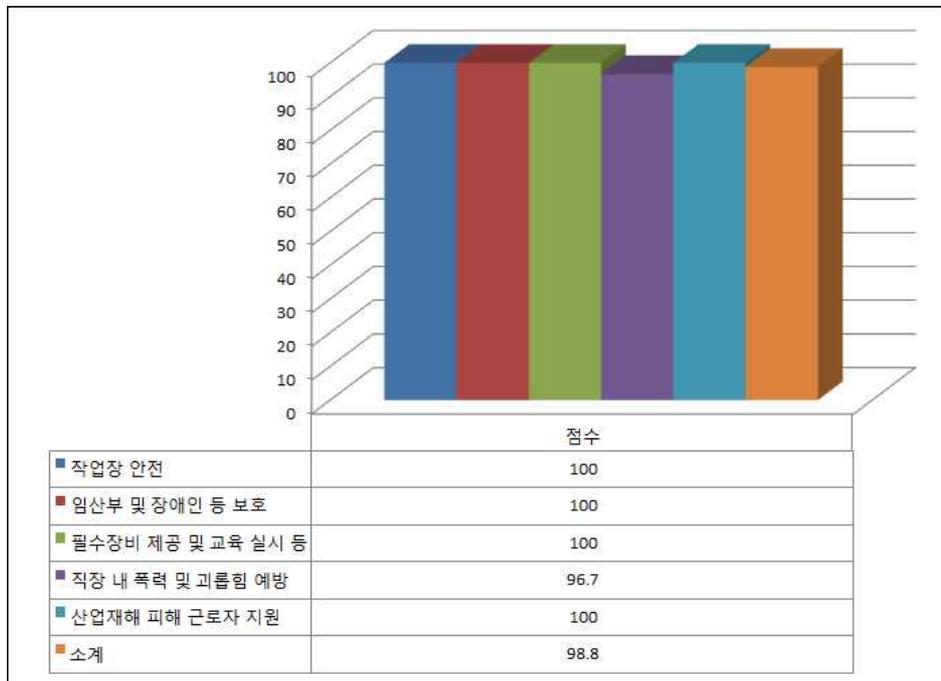
2) 개선 및 발전 방안

-

바. 산업안전 보장

1)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목	답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작업장 안전	7	0	0	0	0	100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5	0	0	0	0	100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5	0	0	0	0	100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	11	1	0	0	0	96.7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3	0	0	0	0	100
소계	31	1	0	0	0	98.8



2) 개선 및 발전 방안

연번	개선과제	문제점	추진 방향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준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정책은 업무 관련 민원인 또는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의한 괴롭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적용범위를 외부이해관계자로 확대해, 외부 이용자에 의한 폭언, 폭력 등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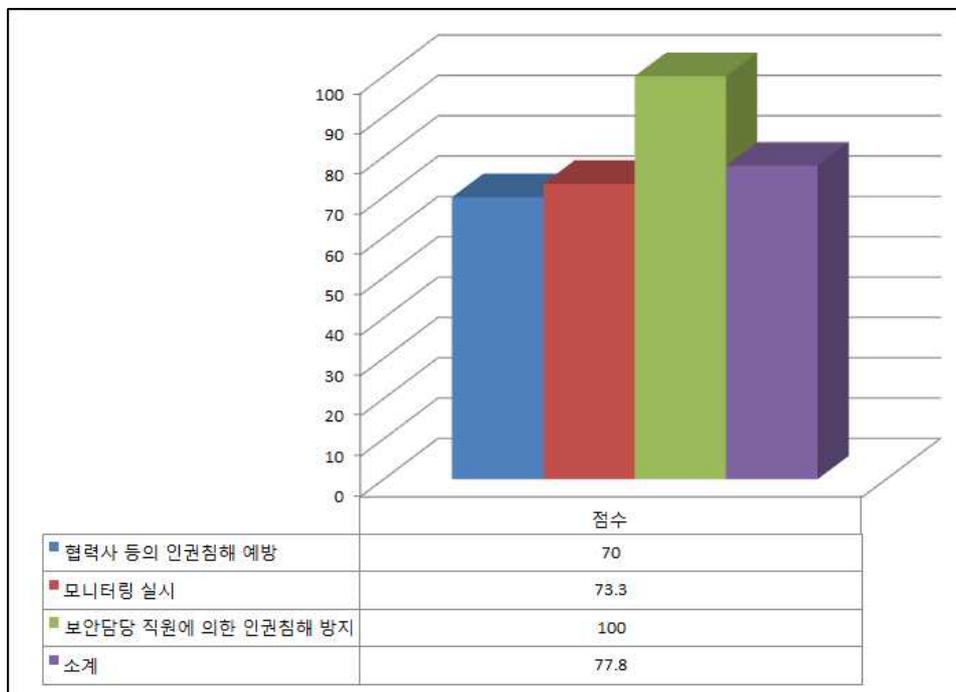
미흡

조치 강화

사.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목	답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	3	0	0	0	70
모니터링 실시	1	2	0	0	0	73.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2	0	0	0	2	100
소계	4	5	0	0	2	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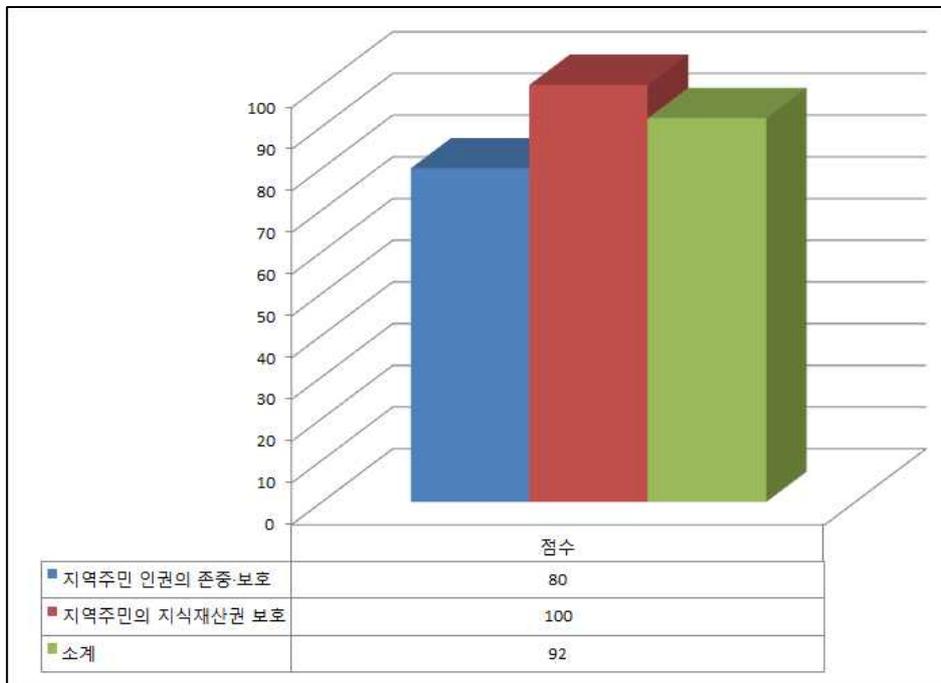
2) 개선 및 발전 방안

연번	개선과제	문제점	추진 방향
⑤	계약절차에 학교 인권정책 확산 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산하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사업수행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징구 등 계약절차에서 사업 참여자에게 학교 인권정책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화된 장치 보완

아.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목	답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	1	0	0	6	80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3	0	0	0	0	100
소계	4	1	0	0	6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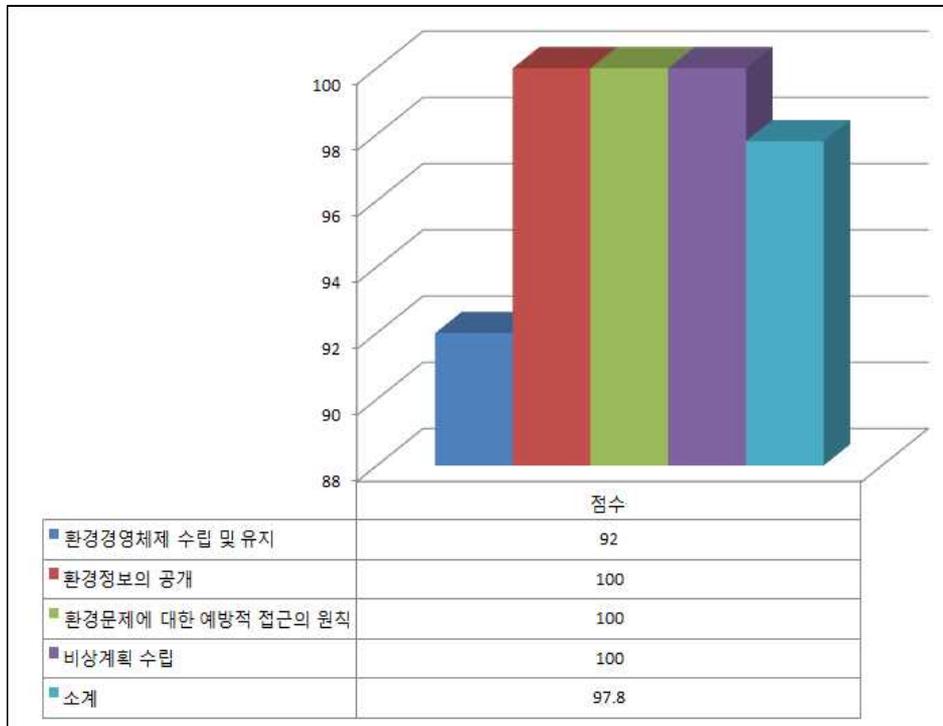
2) 개선 및 발전 방안

-

자. 환경권 보호

1)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목	답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4	1	0	0	0	92
환경정보의 공개	3	0	0	0	0	100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5	0	0	0	0	100
비상계획 수립	5	0	0	0	0	100
소계	17	1	0	0	0	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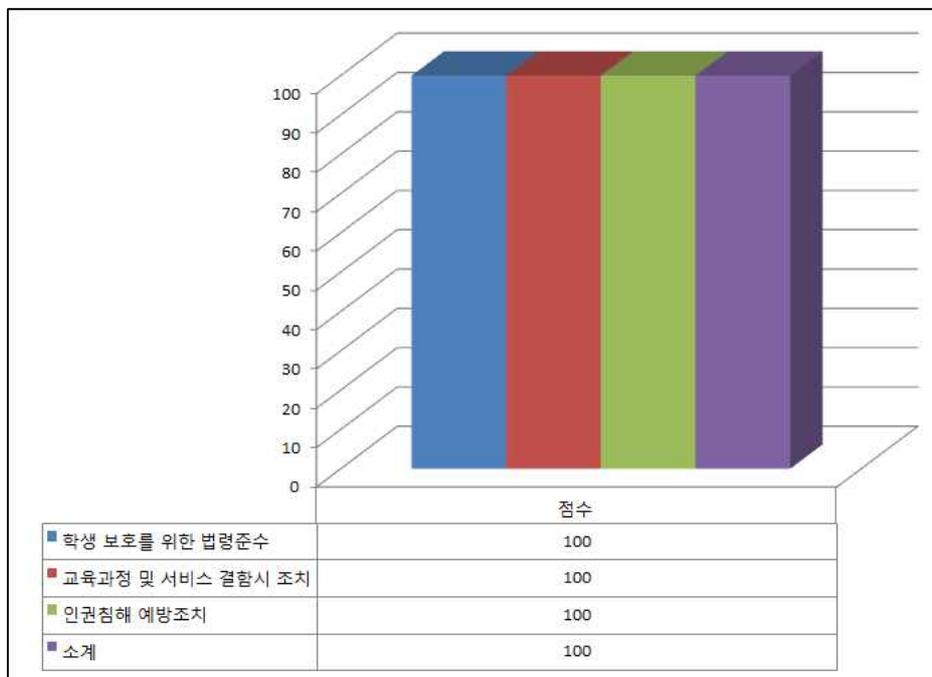
2) 개선 및 발전 방안

-

아. 학생 인권 보호

1)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목	답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5	0	0	0	0	100
교육과정 및 서비스 결함시 조치	2	0	0	0	0	100
학생 사생활 보호	8	0	0	0	0	100
인권침해 예방조치	3	0	0	0	0	100
소계	18	0	0	0	0	100



2) 개선 및 발전 방안

-

II 사업평가 결과

1.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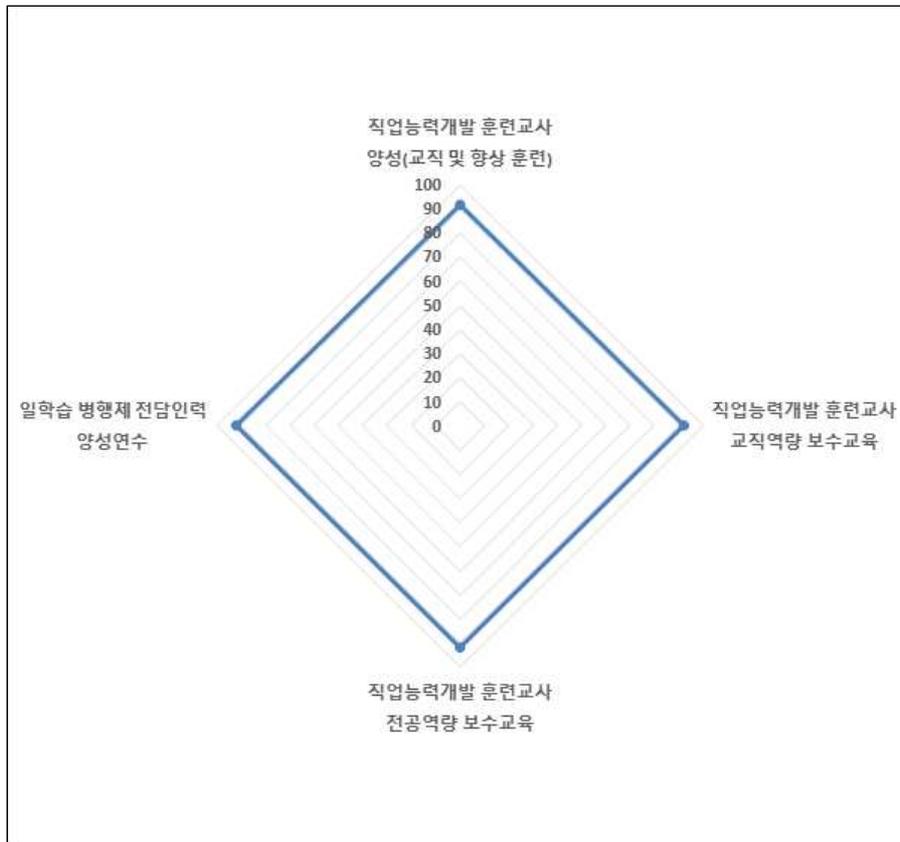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평가대상 사업(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양성, 교직원양 보수교육, 전공역량 보수교육, 일·학습 병행제 전담인력 양성연수) 실행 절차 및 관행에 대학 인권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인권침해를 회피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사업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관련 상세정보를 능력개발교육원 웹사이트 및 홍보물을 통해 제공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 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능개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피교육생에 의한 폭언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사업 담당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사업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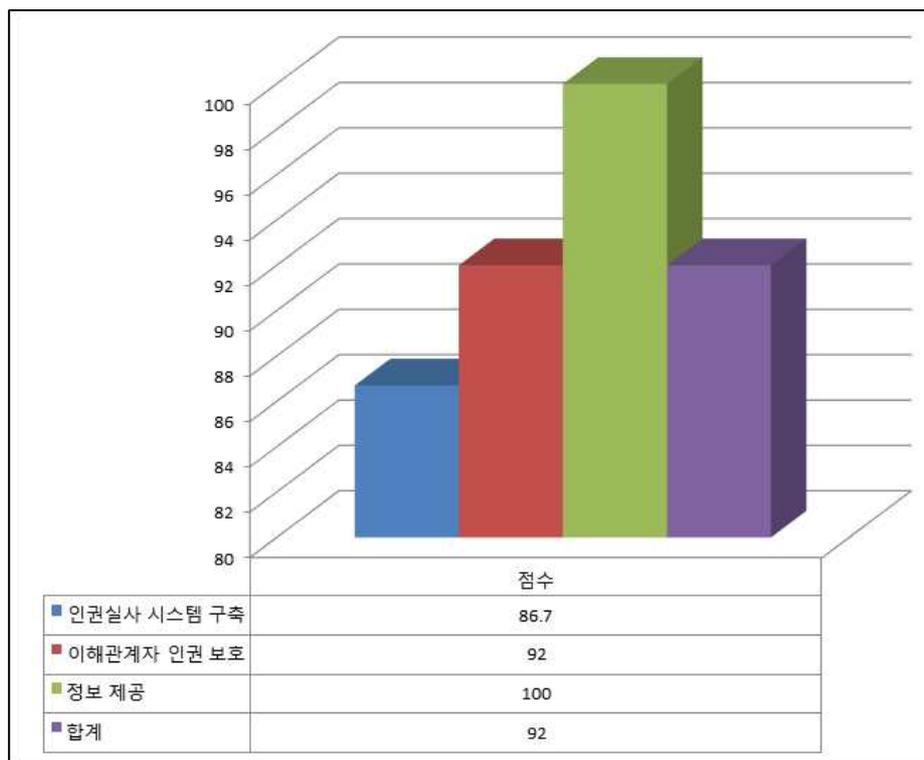
연번	분야	답변 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양성 (교직 및 향상 훈련)	8	2	0	0	0	92
2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교직원양 보수교육	8	2	0	0	0	92
3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공역량 보수교육	8	2	0	0	0	92
4	일·학습 병행제 전담인력 양성연수	8	2	0	0	0	92
합계(평점)		32	8	0	0	0	92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항목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보완필요 3점·정보없음 1점·아니요 0점)
- ※ 항목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sum(\text{해당항목 지표점수}) / (5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times 100$
- ※ 해당 없음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사업별 점수 분포>



<분야별 점수 - 공통>



3. 개선 및 발전 방안

연번	개선과제	문제점	추진 방향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준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책은 업무 관련 민원인 또는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의한 괴롭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적용범위를 외부이해관계자로 확대해, 외부 이용자에 의한 폭언, 폭력 등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⑤	계약절차에 학교 인권정책 확산 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산하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사업수행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징구 등 계약절차에서 사업 참여자에게 학교 인권정책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화된 장치 보완
⑥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사업정보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개발교육원 웹사이트 및 아우누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관련 세부정보에 대한 정보약자 접근성 보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접근성 인증을 통해 정보약자의 사업관련 세부정보 접근성 보장 • 시험절차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관행 구축

*③, ④번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과제로 개별 사업이 아닌, 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과 계약관행 개선 및 보완 관점에서 접근

Ⅲ 구제절차 타당성 제고 방안

1. 대학 구제절차 현황

가. 근거

구분	내용
인권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인권경영 이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전담조직) ① 대학교는 인권증진을 위한 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3. 인권침해나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사건 접수, 조사 및 처리 • 제6장(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제26조(인권침해 구제)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인권센터의 조직 및 업무) • 제3장(사건 처리 및 절차) 등

나. 신고센터 운영현황

	신고센터	방식	대상	분야	비고
1	인권센터	(익명 or 실명)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고	대학 내 구성원	성희롱·성폭력 · 직장내괴롭힘 · 인권 침해전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 운영
2	KOREATECH 부정·부패 신고센터	(익명 or 실명)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고	교직원	갑질·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등 윤리·인권 침해전반	
3	노동조합	대면신고	노조원	윤리·인권 침해전반	

4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 통한 실명 신고	직원	안전·보건 전반	
5	헬프라인 (레드휘슬)	익명 제보 시스템 온라인 신고	전국민	부패행위 일체	외부기관 운영 신고 시스템(https:// www.redwhistle.org)

다. 인권센터 사건처리 절차



2. 검토 결과

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구분	주요 내용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의 • 조사와 처리의 원칙 • 사건처리기한 • 문서의 송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의 • 적용범위 • 기관장의 책무 •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포함)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 고충상담원 • 성폭력심의위원회 구성 • 인권심의위원회 구성 • 회의 및 의결정족수
사건의 접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의 접수 • 진정 접수전 상담종결 • 문서에 의한 진정 • 전화진정 • 구술에 의한 진정 • 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 통계를 위한 자료조사 • 대리인 및 대표자 • 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 사건의 분류 • 사건기록의 작성·관리 • 물건 등의 보관 • 물건 등의 반환 • 사건기록의 송부 • 사건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및 접수
사건의 조사 및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의 각하 및 이송 • 사건의 분리·병합 • 사건조사 등 • 조사중의 소위원회 상정 • 조사중지 • 조사종료시의 소위원회 상정 •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 각하 • 신고의 이관 • <u>임시조치</u> • <u>조사 및 보고</u> • 조사의 방법 • 조사의 중단 • 심의 및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심위원에 의한 검토 • 소위원회의 심의 • 합의 • 조사중해결 • 결정문 작성 • 의결서 작성 •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 <u>긴급구제 조치</u> • 진정의 취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등의 배척 • 위원 등의 기피 • 위원 등의 회피 • 위원의 해촉 • 위원의 교체 • 신고의 기각 • 당사자 합의 등 • 조정 • 신고의 철회 • 구제조치 등 • 조치 이행의 확인 • 개선권고 • 이의신청 • 피해자 보호 • 비밀유지 의무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관련부서 협력의무 • 수당 등 경비 • 운영세칙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직권조사</u> • 제보자 등의 보호 • 사건기록 등의 열람, 복사 • 허가여부의 결정 • 열람·복사 등의 방법 • 권고 후 사후관리 • 운영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규칙> 제17조 1항 직권조사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8조를 참조해 구체화*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다른 규칙의 폐지
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진정서</u> • <u>접수증명원</u> • <u>확인서 및 면전진정신청 접수 확인</u> • <u>면담일정 및 면담일정서</u> • <u>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u> • <u>진정봉투</u> • <u>열람금지서면표지(붉은색)</u> • <u>사건처리결과통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을 별지로 보완

* 제38조(직권조사)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직권조사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 또

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미리 송부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9.3., 2017.5.29.><개정 및 단서신설 2018.8.27.>

② 제1항의 경우 소관 소위원회는 직권조사사건에 대한 주심위원을 선정하고 해당 조사부서에 그 사건(이하 “직권조사사건”이라 한다)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3, 2009.4.8, 2009.9.3.>

③ 제2항에 의한 직권조사사건을 배정받은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의 표제를 붙인 다음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09.4.8, 2009.9.3.>

④ 직권조사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9.3.>

나. 구제절차 전담인력의 전문성

문제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구제기구 위원 및 실무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훈련 제공 근거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기구 위원 및 전담조직 실무자(고충상담원) 대상 구제절차 교육 및 훈련 제공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규칙 제 7조(인권교육) 보완

나. 인권침해구제기구 독립성

문제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심의·의결 기구로 합의제 또는 옴부즈맨과 같은 독립제 기구를 제안하면서, ‘독립성’을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음(공공기관 인권경영 표준매뉴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합의제 기구인 인권심의위원회 및 성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 비중이 50% 미만으로 구제채널에 대한 피해자 접근성과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부정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조사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보장은 의무화하고 있음(제17조 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부위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구제절차 접근성과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제10조, 11조)

라. 고충처리 매커니즘 적용 범위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사법적·비사법적 구제기관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관련 인권고충이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학의 대응조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사법적·비사법적 구제기관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관련 인권고충이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 표명 제33조(이의신청) 4항으로 보완 또는 별도의 항으로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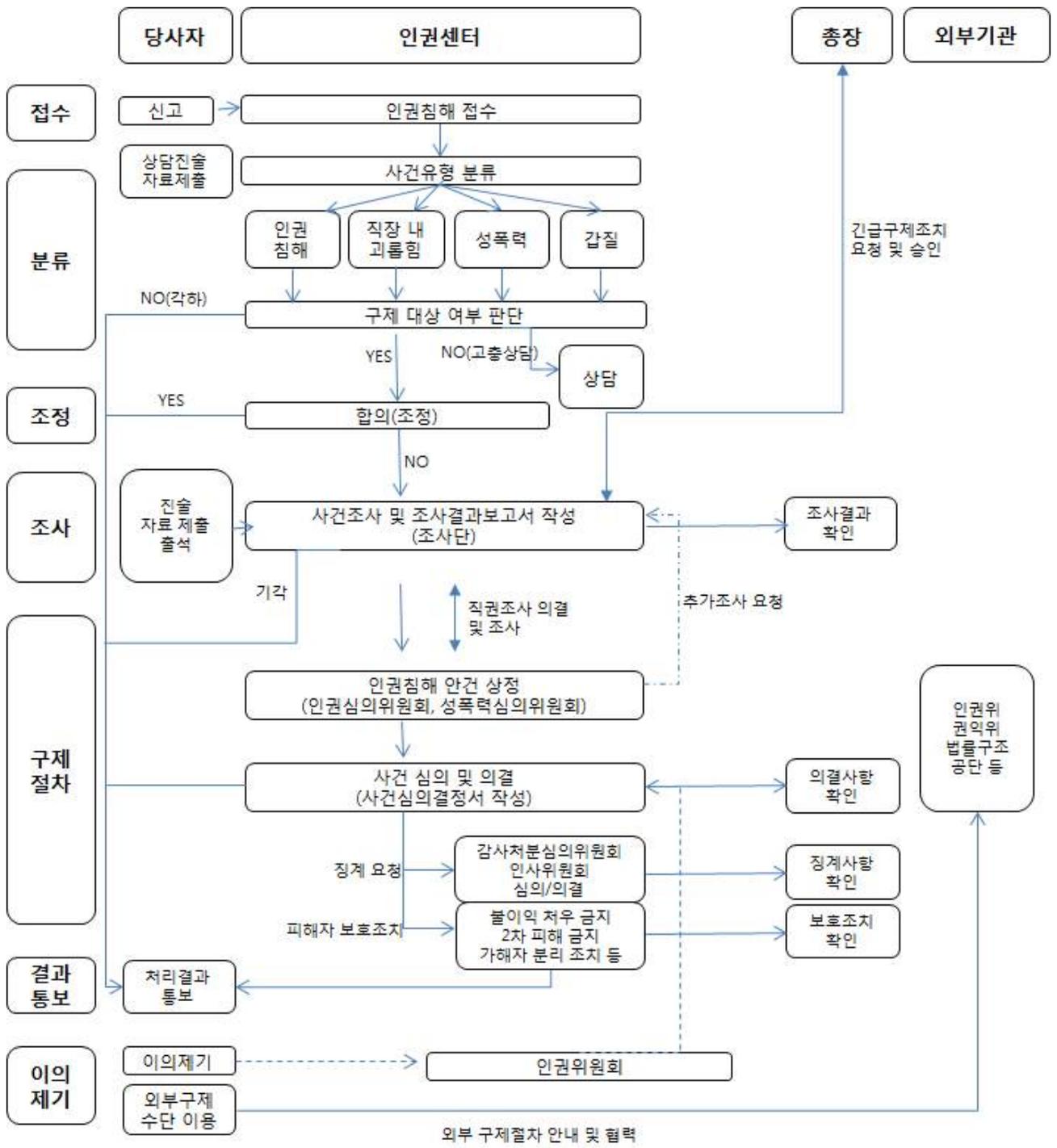
마. 기타(별지 서식 예)

개선 전	개선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 신청서 진정 접수대장 조정확인서 진정취하서 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질문서 진술의 녹음·녹화 동의서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이의신청서 인권심의위원회 의결서 성폭력심의위원회 의결서

※ 별지서식은 인권침해 조사구제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내부검토를 통해 선별, 개선 사용

바. 프로세스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장 보고라인 및 외부 구제기관 연계 라인 부재 직권조사 및 임시조치 반영 미흡 사건 유형 분류 및 데이터 구축 단계 미흡 상담단계가 구제대상 여부 판단 단계와 혼재되어 있어 분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총장보고 및 확인사항 명시 임시조치 및 직권조사 단계 명확화로 활용도 제고 구제대상여부 판단 후, 대상이 아닌 경우 고충상담 제공 순으로 절차 개선 외부 구제수단 이용 시 대응 표시



IV 향후 과제

1. 2021-2022년 중점 추진과제

연번	개선과제	문제점	추진 방향
①	인권위원회 구성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추진기구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인권위 표준매뉴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학생이 배제되어 있음 • 인권심의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 심의 및 의결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인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 상 외부위원 비중이 50%미만으로 독립적인 심의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권경영이행규칙 개선 • 인권위원회 외부위원 비중을 50%이상으로 개선해 독립성 보완
②	인권경영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실행성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된 자료(연례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접근 제약 • 학교 및 인권센터 웹사이트에 공개된 인권경영 성과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기관의 인권준수 노력을 평가하기에 부족 • 성과 공개 부족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족과 인권정책 준수책임 회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이행성과 정보를 인권센터 웹사이트에 반기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성화(e.g. 인권센터 게시판을 통해 인권경영성과, 인권정책 및 구제시스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의견, 효과성 정도,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채택된 의견에 대해 보상) • 성과정보는 경영실적보고서 내용 활용 • 인권센터 웹사이트 접근성 제고(학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등 접근 채널 다양화)

③	인권침해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잠재된 강제노동 요소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인격권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강제노동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갑질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존재한다는 응답 비중이 적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유형 및 가해자 현황, 원인 등을 파악 • 구제절차 접근성 제고 • 인권교육 콘텐츠 반영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준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책은 업무 관련 민원인 또는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의한 괴롭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적용범위를 외부 이해관계자로 확대해, 외부 이용자에 의한 폭언, 폭력 등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⑤	계약절차에 학교 인권정책 확산 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산하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사업수행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징구 등 계약절차에서 사업 참여자에게 학교 인권정책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화된 장치 보완
⑥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사업정보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개발교육원 웹사이트 및 아우누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관련 세부정보에 대한 정보약자 접근성 보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접근성 인증을 통해 정보약자의 사업관련 세부정보 접근성 보장 • 시험절차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행 구축
⑦	구제절차 타당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기구의 독립성 미흡으로 구제절차의 접근성, 신뢰성 부족 • 구제전담 기구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 제공 근거, 관련 서식 부재 • 직권조사에 대한 단편적 규정으로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움 • 외부 구제기관을 통해 고충을 접수한 경우 한국 기술교육대학교의 대응노력 부재 • 구제 프로세스에 총장의 관여, 임시조치 및 직권조사, 외부 구제기관 이용시 대응이 명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규칙> 인권심의위원회 구성과 내용 개선 • 구제 프로세스 개선

		음 • 구제대상 판단과 상담 단계가 혼재되어 분리 요 망	
--	--	---------------------------------------	--

3. 경영평가 연계

경영 평가		개선과제 연계
구분	세부 내용	
인권경영체계 구축	<p>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 및 인권경영 선언·공표·교육 등 대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전담조직 및 인권 배치,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권교육과 훈련 계획 및 실적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p>①인권위원회 구성 보완 ⑤계약절차에 학교 인권정책 확산 장치 마련</p>
인권영향평가 실시	<p>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인권영향평가(실시계획 수립, 기관 실정에 맞는 체크리스트 작성, 실무교육 실시, 평가 및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인권위원회 및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선정계획 수립, 사업별 지표 마련, 지표 선정 시 다양한 주체 참여) 	<p>③인권침해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잠재된 강제노동 요소 개선</p>
인권경영 실행·공개	<p>인권경영(사업)을 실행하고 인권경영 전 과정을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조치 수립 및 실행, 이해관계자에 공개,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공개 	<p>②인권경영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 ⑥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사업정보접근성 보장</p>
구제절차 제공	<p>기관 실정에 맞는 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실정에 맞는 독립성이 보장된 구제기구(담당자) 운영 • 외부 구제기관 활용 가능성 	<p>④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준수 강화 ⑦구제절차 타당성 제고</p>

